□ 정부시책 □

무역 · 투자 진흥대책 확정

정부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수출에 활로를 불어 넣는 한편 수출입금융의 경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A(인수도조건)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을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수업체들의 수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업체'를 매년 1천개씩 향후 5년간 5천개를 지정해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의 제약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신용보증 실시로 대기업에 대한 DA 수출환어음 매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플랜트 수출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무역 · 투자진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 · 투자 진흥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제2차 무역 · 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는 수출입금융의 경색이 수출에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신용보증이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담보문제를 보완, 수출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대신 DA수출환어음 매입기피 현상 해소 등 금융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키로 했으며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갖고 있는 중소업체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내수업체들의 수출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업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번 제2차 무역 · 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

〈 무역진흥대책 〉

1.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의 획기적 지원확대

- LC를 수취한 기업은 선적전 무역금융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에서 전액 보증지원
- 보험료 할인대상 '유망중소기업' 범위를 440개에서 3,180개로 확대.
- 올해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20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에 2천

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

2.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금융 경색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

- DA방식의 외상수출환어음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특별보증으로 지원
- 신용보증에 대한 추가출연(하반기 5천억원)으로 보증여력을 확충해 수출입금융 보증 지원에 주력.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로컬LC를 개설해 주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 무역금융 신규취급 전액분을 한은이 총액한도 대출로 지원하고 총액한도 여유분 6천억원이 소진시 추가 증액 추진.

3.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의 제약을 감안해 수출입금융 이용여건 개선에 주력

-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은행의 본지사 DA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기피현상을 해소.
- 대기업 수입LC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로 예정.
-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재원확보, 보증지원 및 연불수출 금융지원 활성화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보증지원 확대.

4.수출입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조달청 비축자금을 추가 확보해 비축사업을 확대(4,300억원에서 1조2천억원 규모)

- 조달청 자금 지원시 수출신용장 또는 연대보증만으로 담보력을 인정하는 등 신용위주로 지원

5. 중소기업의 일관수출지원체제 구축

- 마케팅·금융·보험·기술·디자인 등의 전문인력(10~15명)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12개 시·도에 설치하고 貿公 지방무역관이 주도적으로 운영
- 창업 및 벤처형 내수기업, 수출전문화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기업화업체 지정·육성제도 실시(연간 1천개씩 5년간 5천개 업체의 육성을 목표로해 수출관련 전과정에 대해 밀착·추적 지원)

6. 수출기업의 사기진작

- '이달의 무역인'상을 제정, 각종 수출지원시 우선 지원
- '무역의 날' 포상기업 확대 및 세무조사 면제 우수업체 확대

7. 기타 무역·투자 현장애로 타개 세부추진과제

- 중소기업제품 수출의 관건인 해외인증마크 획득지원,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관련 예산 추가지원

- 수산물 수출수매자금(농안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 증액 등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 관세 일괄납부정산제도 이용기준 완화, 해외건설이행보증지원 확대, 한·이란 은행간 직접거래 재개 추진 등 수출입관련 부담 경감.

〈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대책 〉

1. 투자유치사절단 참가기업 사후관리 강화

- 貿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후관리전담팀을 구성, 각종 정보제공, 파트너 알선, 애로해결 등 일대일 밀착지원 실시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기 제정

- 자동승인제 및 대행서비스 도입 등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 세제감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대상인 고도기술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직업훈련보조금, 임대료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지역' 설치 등 투자유치 기본제도를 마련

3. 貿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체제를 구축,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현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은 외국인투자 상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2달간 총 2,813건에 달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지원도 상반기중 20건 2억3,900만달러에 달하며 유치를 추진중인 사업은 25건 5억4,500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4.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

- 8월중 싱가포르, 10월중 일본에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미국·스웨덴 등 10여개국의 투자사절단 유치
- 주한 외국인기업인 등을 Mini-Ambassador로 위촉해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

5. 기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증액투자 및 대외홍보 효과를 제고

- 54개 수출입관련 법령을 조사,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장의료보험 적용, 외국제약기업의 위탁제조 허용, 화장품 종별 허가제 폐지 등 외국인투자가들이 제기해온 애로사항의 해결

6.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

'98 제2차 공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공고

산업자원부는 수출제품과 관련된 핵심부품 및 기술, 신소재, 엔지니어링 분야 등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올해 제2차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기간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국산화 시급기술을 '98년도 제2차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원대상분야를 공고했다.

Ⅰ. 지원대상 분야

- o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중 다음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 수출전략품목 : 수출증대에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제품과 관련된 핵심부품·기술, 신소재,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로서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 수입대체품목 : 국내수요가 연 400만불 이상의 수입품목으로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 ※ 상기 공히 '98. 1월 공고된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의약·농약 분야는 제외

Ⅱ. 지원내역

- o 지원규모 : 총 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으로 추진(과제당 3억원이내/년)
- o 개발기간: 2~3년이내(매년 협약)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④ 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⑧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나. 신청방법

- 1차 신청 : 지정된 별도의 1차 사업계획서(요약) 양식에 따라 신청
- 2차 신청 : 1차 사업계획서 심사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한하여 2차 사업계획서를 별도신청(2차 사업계획서 신청대상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동 계획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98. 7. 3 (금)부터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02-8298-672/9)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관악타워6층(우 156-010)
- 접수시간 : '98. 7. 27(월) ~ 7. 31(금) (5일간)(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유효)

라. 유의사항

-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연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하며 총 개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입대체품목 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개발품목에 대하여 국내수요가 연 400만불 이상이 되는 근거를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하여야 함.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50%(설립한지 7년이내의 창업은 30%)를 5년 균등분할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예산사정과 분야별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98년도 1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주관기업/참여기업/총괄책임자)으로 기선정되었거나, 해당기관에서 기신청하여 탈락된 과제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 의 처

o 지원대상분야, 신청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문의

- 사업안내 및 양식
  - 인터넷 : (http : // www.itep.re.kr)→ 주요사업안내→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하이텔 : 자료실→7. 데이터자료실→ 1. 일반자료실→과학/기술→Li itepl
  - 천리안 : 자료실 → 8. 워드/문서 → 7. 기타 워드프로세서 관련/양식 → from itpcl
  - 기계·금속·광학 및 기반기술분야 : 02-8298-661/8
  - 화공·섬유분야 : 02-8298-671/6
  -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S/W분야 : 02-8298-681/9

수입선다변화 해제 및 향후 해제품목 예시

산업자원부는 '98. 6. 30일부터 40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8. 12월 해제 예정인 32개 품목과 '99. 6월 해제예정인 16개 품목도 함께 예시하였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맞춰,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78년 도입된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99년말까지 운영하기로 WTO등에 통보하였으나, 작년말 IMF와 협의시 당초 일정을 다소 앞당겨 '99. 6월말 완전폐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그간 매년 2차례씩 다변화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왔으나, 폐지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대외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관련 업계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완전폐지되는 '99. 6월까지의 해제 일정과 품목도 함께 예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금년 6월 30일부터 해제되는 품목은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실린더 용량 50cc 이하), H형강, 칼라텔레비젼(21″ 이상 25″ 미만), 팩시밀리 등으로, 국산화율이 높거나 수출비중이 커진 품목,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어느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시장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대일수업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품목, 내수시장 규모가 큰 품목, 설계 및 기술개발 능력·품질·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중 자동포장기계, 캠코더,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등 32개 품목은 '98. 12월에, 승용차,

칼라텔레비젼(25″ 이상), 휴대용 무선전화기, 굴삭기 등 16개 품목은 '99. 6월에 해제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99. 6월 해제 이후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해제품목 및 해제 예시품목 (전기관련)

○ '98. 6월 해제 품목

- 완전 해제 품목

H S	품 목
8504 40 2090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8536 50 4000	전자개폐기

- 부분 해제 품목

H S	현 행	조 정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그루버·정타기·함마·고주파전동공구·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전기식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그라인더, 샌더, 베벌러, 폴리셔)에 한함

- '98. 12월 해제 예시품목

H S	품 목
8502 12 0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36 20 0000	자동차단기

- 완전 해제 품목

H S	품 목
8516 60 2000	전기밥솥

2010년 산업기술예측 · 發展전략 마련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통신기기 · 반도체 · 자동차 · 멀티미디어 · 환경산업 등 차세대 10대 주력산업을 선정, 오는 2010년까지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103개 핵심 기술과제를 도출, 개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산하 연구관리 · 평가기관인 산업기술정책소에 '97년 5월부터 '98년 6월까지 산 · 학 · 연 전문가 3천여명을 동원, 2010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45개 업종에 대해 성장가능 분야와 정책적 지원필요 분야를 도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은 통신기기 산업이며 반도체 · 자동차 · 멀티미디어 · 환경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산업은 통신기기 산업과 환경산업, 반도체, 항공 · 우주산업, 생물산업 등이며 이중 통신기기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대응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산업과 생물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는 어려운 산업으로 정부의 시장조성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도출된 각 기술과제들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40~60% 수준에 불과해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산 · 학 · 연 연계의 강화'를 꼽았으며 연구인력의 양성과 연구자금의 지원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이번에 2010년 산업기술예측과 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은 현재와 같이 선진국 기술을 모방 또는 추종하는 기술개발만으로는 선진 기술국으로의 진입에 한계가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2010년대 새로운 효자산업의 육성에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에 도출된 10대 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기거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매년 700~8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추진될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0년 한국산업기술 예측결과

● 2010년경 국내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 예측결과

순위	2010년경 국내 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산업
1	- 통신기기	- 통신기기
2	- 반도체	- 환경산업
3	- 자동차	- 반도체
4	- 멀티미디어	- 항공·우주산업
5	- 환경산업	- 생물산업
6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멀티미디어
7	- S/W 및 전자게임	- 자동차
8	- 평판 디스플레이	- S/W 및 전자게임
9	- 전자부품 및 재료	- 전자부품 및 재료
10	- 항공·우주산업	- 자동화기기

● 「2010년 산업기술예측」에서 도출된 기술의 우선순위

순위	기 술 과 제 명	분 야
1	긍극적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항암제가 실용화 된다.	생물·정밀화학
2	(신소재와 엔진효율의 향상으로) 현재보다 연료소비가 30% 저감된 자동차가 실용화 된다.	생산·자동화
3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용화 된다.	환경·중전기기
4	벽걸이 겸용의 고해상도 25인치 이상의 컬러 평면 디스플레이가 실용화 된다.	전자·정보통신
5	바이러스 질병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수의 항바이러스제가 실용화 된다.	생물·정밀화학
6	광대역 ISDN의 실현(ATM 교환기의 보급등)으로 고속통신 및 다중서비스가 실용화 된다.	전자·정보통신
7	수 10~100Giga bps급의 네트워크가 실용화 된다.	전자·정보통신

순위	기 술 과 제 명	분 야
8	디젤엔진으로 부터 배출되는 공해물질을 촉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	환경 · 중전기기
9	400Wh/I의 용량을 갖는 플라스틱 2차 전지가 실용화 된다.(현재의 Ni-Cd 전지의 용량은 180wh/I)	전자 · 정보통신
10	가상현실이 각종 S/W(교육, 업무, 전자상거래 등)에 실용화 된다.	전자 · 정보통신
11	질소산화물 0.1g~0.2g/km의 배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모든 차종에 보급된다.	환경 · 중전기기
12	1칩당 1기가 비트 메모리급 이상의 초 LSI가 실용화 된다.	전자 · 정보통신
13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치유하는 약제가 실용화 된다.	생물 · 정밀화학
14	도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위한 써모셀렉터(Thermoselector)등 열분해 시스템을 이용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설비가 실용화 된다.	환경 · 중전기기
15	폐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소재화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	환경 · 중전기기

● 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상위 10대 과제

순위	기 술 과 제 명	기술적중요도	분 야
1	긍극적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항암제가 실용화 된다.	91. 7	생물 · 정밀화확
2	1칩당 1기가 비트 메모리급 이상의 초 LSI가 실용화 된다.	91. 4	전자 · 정보통신
3	(신소재와 엔진효율의 향상으로) 현재보다 연료소비가 30% 저감된 자동차가 실용화 된다.	88. 1	생산 · 자동화
4	광대역 ISDN의 실현 (ATM교환기의 보급등)으로 고속통신 및 다종서비스가 실용화 된다.	87. 7	전자 · 정보통신
5	고효율 초저가 태양전지가 실용화 된다.	87. 3	전자 · 정보통신
6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용화 된다.	86. 8	생산 · 자동화
7	10나노미터의 최소 치수를 갖는 패턴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	86. 8	전자 · 정보통신
8	바이러스 질병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수의 항바이러스제가 실용화 된다.	85. 9	생물 · 정밀화학
9	4G DRAM이 실용화 된다.	85. 5	전자 · 정보통신
10	HIV 백신이 실용화 된다.	85. 0	생물 · 정밀화학

●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상위 10대 과제

순위	기 술 과 제 명	사회적중요도	분 야
1	궁극적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항암제가 실용화 된다.	95. 7	생물·정밀화학
2	(신소재의 엔진효율의 향상으로) 현재보다 연료소비가 30% 저감된 자동차가 실용화 된다.	93. 4	생산·자동화
3	바이러스 질병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수의 항바이러스제가 실용화 된다.	91. 9	생물·정밀화학
4	광대역 ISDN의 실현(ATM교환기의 보급등)으로 고속통신 및 다종서비스가 실용화 된다.	91. 2	전자·정보통신
5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용화 된다.	91. 1	환경·중전기기
6	고효율 초저가 태양전지가 실용화 된다.	91. 0	전자·정보통신
7	도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들을 위한 써모셀렉터(Thermo-selector)등 열분해 시스템을 이용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설비가 실용화 된다.	89. 4	환경·중전기기
8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예방·치료하는 기술(제품)이 실용화 된다.	89. 4	생물·정밀화학
9	1칩당 1기가 비트 메모리급 이상의 초 LSI가 실용화 된다.	89. 0	전자·정보통신
10	통근 이용에 견딜 수 있는 충전용량의 배터리가 실용화되어 시내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보급된다.	88. 9	생산·자동화

'수출산업화 업체 지정제도' 新設

정부는 2천년말까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50%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출산업화 업체 지정제도'를 신설, 이들 업체에 대한 마케팅·기술·디자인·품질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12개 도시에 중소기업 수출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지원 일관서비스 및 중소 수출산업화 업체에 대한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2천년말까지는 대만 수

준인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수출산업화업체 지정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수출산업화업체 지정대상은 수출실적이 연간 800만달러 이하의 중소업체로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70% 이하의 중소 수출업체, 수출전환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기술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중 수출 추진업체 등이다.

수출산업화업체는 정부로부터 마케팅·기술·디자인·품질 등에 대해 지도를 받게되며 수출보험부보 및 신용보증서발급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수출의 지원을 효율화 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12개 주요 도시에 있는 貿公 지방무역관을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일관·종합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수출종합 지원센터'로 전환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일관서비스, 중소수출산업화업체 지정 및 관리,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수출지원 추천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지원체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바이어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실무 교육·연수 및 무역 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제품을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대행체제도 확대키로 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장입지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선승인제도의 도입」과 「의제처리 범위의 확대」,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아파트형 공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공장설립 지원

- o 사업에 필요한 각종 영업상의 인·허가 및 등록사항들에까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립부터 가동시까지 필요한 행정사항을 단일창구에서 일괄처리토

록 함

- o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이 법에 통합규정
- o 공장설립승인 판단에 필수적인 사업계획서등의 3~4종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승인후에 징구하도록 하는 선승인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o 중소기업 창업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을 받더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창업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함
- o 공장설립대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설립대행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나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원

2.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규제를 과감히 정비

- o 기준공장면적률로 산정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o 과밀 억제지역에서 일정한 요건(예 : 국방상, 국민경제상, 환경상 필요성 등 고려)하에 이전 명령대상 공장으로 지정하여 이전 명령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율적 활동 보장
- o 이 법에 의한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조정하여 경제활동으로 인한 처벌조항 완화

3. 산업단지내의 기업활동 지원 확대

- o 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원활한 토지거래를 알선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입주업체 지원 확대
- o 외국인 전용단지 관리기관의 외자도입신고, 토지취득신고,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대행서비스를 다른 법령상 인·허가까지 확대
- o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등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공장 및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현행은 공장 및 산업용지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 가능)
- o 지자체의 외국인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o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시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4. 기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ㅇ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의 안전준수 의무 및 설치자의 하자보수 책임등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 등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
- ㅇ 임대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의 분할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도모
- ㅇ 농공단지의 명칭을 농어촌 산업단지로 변경

과기부, 핵심 과학기술 발전동향 분석

□ 세계의 기술발전 동향

지구환경문제의 대두로부터 WTO체제하에서의 그린라운드 태동의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국가 차원의 에너지 개발과제를 수행해 왔다. 미국의 Clean Coal Technology Project, 일본의 New Sunshine Project, EU의 에너지기술 공동연구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21세기에는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의 개발 확대,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이 기술발전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로 유형은 경수로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중 가압경수로가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선진국들은 국제공동연구 또는 자체연구 계획을 수립하며 원전의 표준화와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형연구로를 이용한 RI 생산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처리와 안전성 확보,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의 운영 및 관리기술의 향상 등이 기술발전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질조사 기술의 경우 주제별 정밀국토 기본도 작성과 지각변형연구가 진행중이며 유전 및 가스전 탐지를 위한 AVO기술 개발과 인공위성 자료 해석에 의한 원격 탐사법과 GIS기법 활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21세기에는 지구물리탐사 및 원격탐사기술의 종합화, 자원개발의 무인화 및 심해저 자원의 채취, 자원처리 및 회수에 있어서 효율성과 환경보전 추구, 석유 탐사 및 개발기술의 체계적 발전, 그리고 산업원료의 안정적 확보 및 가

격안정화와 첨단산업소재 국산화 등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 신소재기술 등을 기존의 전력기술과 결합시킴으로써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력 기기와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대용량, 고효율, 소형화, 자동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 추구, 전력기기의 초전도화,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화 등이 추구될 것이다.

□ 국내의 기술수준

에너지 환경기술분야는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온 결과, 화적연료의 청정연료화 기술 기반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석탄 액화 및 가스화, 배연탈황 등의 기술도 기초연구가 마무리된 단계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기술과 대체에너지 이용기술분야 산업기반기술이 취약하고 기술개발력도 미흡하여 선진국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아 아직은 기초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기술분야는 그동안 연구개발 또는 미국·독일·캐나다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원자로계통 설계기술, 핵연료 설계, 제조기술, 원자력 안전성기술, 비파괴 검사기술 등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TRIGA Mark Ⅲ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및 표지 화합물의 생산법 확립과 전선피복재 가교, 방사선멸균, 테프론 분해, 열 수축성 튜브, 발포 폴리에틸렌 등 몇 가지 기술이 국내에서 산업화 되고 있지만 수준은 크게 미흡하여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원기술분야의 경우 암석분포 분석기술이나 탐사기술은 거의 선진국 단계에 도달했으나 유전개발기술이나 3차원 탄성파 탐사기술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원의 활용에 있어 범용 요업원료 활용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고순도화 초미립화 기술을 비롯하여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 등은 기초단계로 선진국의 50% 이하 수준이다.

전력 사용량의 높은 증가에 따라 전력 생산, 수송, 이용기술의 전 분야에 대한 설비확장, 기기 개발, 운용기술 고도화 등과 관련하여 기술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기술인력 부족,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추종형의 첨단기술개발에는 일부 관심을 두어 왔으나 그 연구 성과가 미미하고 기반기술인 설비 운용기술을 해외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등 자체기술 확보에 소홀해 왔다.

□ 중장기 발전목표

관련 핵심기술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1)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2) 관련기술 및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3) 에너지·자원

수급의 국제간 공조 및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요청되는 깨끗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 2020년까지 세계 7대 원자력 기술선진국에 진입
- 국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 고부가가치 자원의 조사·탐사기술 실용화 및 자원개발·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전력공급기술의 자립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관세감면 대상품목 지정

재정경제부는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산업연구용품 253개, 공장자동화시설재 432개, 첨단산업시설재 139개를 각각 지정했다.

또 상용견품의 면세기준을 美貨 250달러 이하로 단일화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감면 대상품목 지정은 작년말 관세감면제도를 확대·연장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사용하는 연구용기자재로서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산업연구용품으로 환경시험장치 등 253개 품목이 지정됐다.

또 전자기술 등을 응용한 자동화기계·기구·설비 등으로 중소기업은 50%, 일반기업은 4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로 자동도금기 등 432개 품목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밀산업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입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으로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첨단산업시설재로 레이저각인기 등 139개 품목이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관세감면품목은 연구용품의 경우 현행 250개에서 3개, 공장자동화 시설재가 412개에서 432개로 20개 각각 늘어난 반면 첨단산업시설재는 190개에서 139개로 51개 주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이들 품목의 관세감면 지원 실적이 1818억원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감면율이 확대돼 그 이상의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무역진흥대책회의 등에서 제기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용해 현행 일반견품은 10만원 이하, 수출용견품은 30만원 이하로 돼있는 상용견품면세기준을 미화 250달러 이하로 단일화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 관세감면 대상물품(전기관련 품목)

○ 공장 자동화기기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02	13	발전기 세트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비상발전용 3천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04	40	전처리정류기 (Rectifi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제어기로부터 지령을 받아 300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의 전력을 직류(DC)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전류 600암페어(A)이하의 출력을 내는 정지형 전력변환깅 한한다.
8514		열처리기(Induction Harden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전자유도식의 것으로서 출력 50킬로와트(kW)이상의 것 2. 고주파열처리기로서 출력 5킬로와트(kW) 이상의 것 3. 중주파(100Hz 내지 500Hz) 열처리기로서 출력 400킬로와트(kW) 이상의 것 4. 전자유도식의 출력 200킬로와트(kW) 이상의 것
8514	10	진공소결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전극제조용 설비로서 규격이 300밀리미터(mm)×300밀리미터(mm)×600밀리미터(mm) 이상이고, 최고온도를 1천400도(℃) 이상, 진공도를 10^5 토오르(torr) 이상의 고진공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514	10	전기로용 알루미늄 아암(Arm)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전기로 작업시 변압기의 전류를 전류봉까지 흐르게 하고, 재질이 알루미늄(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강 또는 고철의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속도가 조정되는 것에 한한다.
8514	10	노콜록용접로(Nocloke Brazing Furnac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온도정도가 ±4도(℃) 이하의 것에 한한다.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8479	10 89	단결정육성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실리콘웨이퍼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514	10, 30	정련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처리용량이 히트당 5톤(t/Heat) 이상이고, 탄소전극봉 승강 자동제어기능이 있는 것 2. 처리용량이 히트당 80톤(t/Heat) 이상이고, 랜스취련방식으로 랜스위치의 자동제어 기능이 있는것
8514	10, 20 30, 40	전기로 또는 오븐 (유리성형/강화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8417 8419	10, 80 39		1. 로의 유지온도가 최고 1천4백5십도(℃)를 초과하거나 최대용량이 4.5톤(t)를 초과하는 것 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기기록매체 또는 광디스크 제조용으로서 확산용 또는 아닐링(Annealing)용의 것 3. 로의 용해온도가 최고 1천5백도(℃)를 초과하는 것 4. 온도정도가 ±5도(℃) 이하인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판유리 또는 자동차용유리의 성형 또는 강화용으로서 온도, 시간, 입출 조절기능이 있고, 최고가열온도가 850도(℃) 이하이며,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내지 300매(pcs/h)인 것 6. 중주파(100Hz 내지 500Hz) 유도로로서 소비전력이 500킬로와트(kW)를 초과하는 것
8514 8479	10, 20, 30, 40 89	경화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부품표면 실장한 후 납 또는 접착제를 경화시키는 것 2.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상·하판의 가합착상태를 완전한 합착상태로 유지하여 셀갭(Cell Gap)이 형성된 씰(seal)제를 경화시키는 것 3. 캠 또는 크랭크핀 표면을 전기가열하여 경화시키는 것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20	인덕션히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단조소재를 가열하여 주는 베어링제조용으로서 최대용량이 400킬로와트(kW) 이상이고, 가열온도 1천100 내지 1천250도(℃)로 가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14	20	전기로유도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주철(Cast Iron)용해용으로서 최고가열온도가 1천500도(℃) 이상이고, 최대생산능력이 시간당 2천킬로그램(kg/h)인 것에 한한다.
8514 8515	20, 30, 11, 19, 80	자동납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표면실장된 부품을 납땜하는 것 2. 적외선히터 발열식 또는 펄스(Pulse) 히터 방식의 것 3. 인쇄회로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예열온도를 자동으로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는 것 4. 1포인트(Point)씩 자동납땜 또는 자동플럭스 도포가 가능한 것 5. 초소형 칩(Chip)부품의 납땜이 가능한 것
8514	20, 30	광휘소둔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철강의 연화 또는 결정조직의 조정이나 내부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열하는 기기로서 머플러(muffle)방식이고 로중 단위당 장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3미터(m/cm^2) 이하인 것에 한한다.
8515 8419	21, 29, 31, 39, 80	용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버트저항, 프라즈마, 레이저빔, 고주파, 아크, 초음파, 전자 빔, 열압, 일렉트로스래그, 써미트, 열압초음파, 심(Seam)저항 또는 서브머지드(Submerged) 용접기 2. 냉간압점기 또는 후레임스카핑기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3. 리튬이온전지 제조용으로서 두께 10 내지 100마이크로미터(㎛)의 스팟웰딩(Spot Welding) 방식의 것 또는 전력용량 20 내지 900와트(W)의 레이저 용접기 4. 마찰용접기. 다만, 피가공물의 연강환봉 직경 10 내지 40밀리미터(mm)의 수평형 마찰용접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차체용접전용 저항용접기로서 동시 용접점수가 30점 이상의 것 6. 동 또는 동합금 제조용으로서 직경 6.35 내지 12.7 밀리미터(mm)의 관을 용접할 수 있는 것 7. 혼합가스용 고속용접기로서 솔리드와이어의 직경이 1.2밀리미터(mm) 이상이고 와이어 공급속도가 최대 분당 20미터(m/min) 이상인 것 8. 캔제조용의 것으로서 두께 0.1 내지 0.3밀리미터(mm)를 분당 25미터(m/min) 이상의 속도로 전기저항 용접이 가능한 것
8515	21, 29, 80	와이어접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반도체 칩가공용 또는 압전기 결정소자용으로서 초음파 방식의 것 또는 초음파 열압착(Thermal Sonic) 방식의 것 2. 엠시엠(MCM) 가공용으로서 결속속도 싸이클당 1초(s/cycle) 이하 또는 결속방법이 에폭시렌진(Epoxy Resin)에 의한 것
8515	80	자동리드본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에폭시, 테이프 초음파(Ultra Sonic), 초음파열압착(Thermal Sonic) 또는 탭 본딩(TAB Bonding) 방식의 것에 한한다.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37 8471	10, 20	배전반 또는 제어반 (조절반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원격조정이 가능한 자동제어반으로서 컴퓨터와 연계사용이 가능하고 일괄 공정젱가 가능한 반도체공장 또는 시멘트 제조공장안 각종 전기 및 공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퓨리티(Purity)를 배전, 제어 또는 조절하는 것 2. 원격조정이 가능하고 일괄 공정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종이 또는 종이가공제품 생산공정의 각종 전기 및 기계설비의 운전상태를 감시 및 제어하는 것 3. 운전중인 제지용 설비의 운전상태(진동, 온도)를 감시(monitoring)하는 것 4. 컴퓨터와 연계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리용해로 온도를 제어하는 전력공급설비 또는 제어반의 것 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제어용의 것 6. 컴퓨터와 연계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공정의 온도를 제어하는 에스시알(Silicon Controled Rectfier)

o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기기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02	39	단락발전기(Short Circuit Generator)	송배전 전력기기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 단락전력을 발생하는 기기로서 발전기의 단자전압은 11 내지 20킬로볼트(kV)이내이고, 초기 단락용량이 1천50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인 것에 한한다.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04	22, 23	시험용변압기 (Testing Transformer)	시간당 2회이상 단락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1차 전압이 11 내지 20킬로볼트(kV)이고, 2차 전압은 4 내지 60킬로볼트(kV)로 정격용량이 3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이며, 단락용량이 35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인 것 2. 1차 전압이 11 내지 20킬로볼트(kV)이고, 2차 전압은 100 내지 1천500볼트(V)로 정격용량이 1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이며, 단락용량이 10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인 것
8504 8543 9030	31, 32 81, 89 39	충격전압발생기	1.2마이크로세컨드(μs)(상승시간)×50마이크로세컨드(μs)(하강시간)에서 250마이크로세컨드(μs)(상승시간)×2천500마이크로세컨드(μs)(하강시간)까지의 전압파형발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04	50	리엑터(Reactor)	시험용 전류의 크기 및 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최대전류가 40킬로암페어(kA) 이상이고 최대투입(Peak)전류가 100킬로암페어(kA) 이상인 것에 한한다.
8514	30	플라즈마용융장치	플라즈마용융소각설비로서 용융로 내화재가 최고온도 2천500도(℃)에서 견딜수 있는 것에 한한다.
8514		노 또는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전기로의 경우 최고온도 1천250도(℃) 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제어범위가 ±5도(℃) 이내의 것 2. 반도체 연구용으로 확산용 또는 아닐링(annealing)용의 것 3. 오븐(Oven)의 경우 온도정도가 ±0.5도(℃) 이하의 것 또는 최고온도 1천500도(℃) 이상으로 사용압력이 표시되는 것 4. 전자빔을 이용한 시료용해로의 것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5. 자동차배터리연구용 소결로 또는 진공유도로서 불활성상태로 조절이 가능한 것. 냉각시 수소장입이 가능한 것 또는 출탕시 급냉장치가 있는 것 6.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의 것으로서 최고 1천도(℃) 이하에서 유리기판을 열처리 하는 것
8515	11, 19	자동납땜기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반도체 리드프레임(Lead Frame) 납땜용의 것에 한한다. 2. 질소(N_2) 분위기 자동 납땜이 가능한 것
8515 8456	21, 29, 31, 39, 80 10	특수용접기 또는 레이저용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초음파방식(초음파열압착방식을 포함), 열방식, 전자빔방식 또는 레이저방식의 것 2. 아르곤용접방식의 것으로 전류가 100암페어(A) 이하이고, 용접핸들 자동조절 및 전류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3. 아크방식의 것으로서 절단된 광섬유를 연결할 수 있는 것 4. 2차전지용 극판 또는 탭(Tab)의 용접이 가능한 것
8535	21	보호차단기 (Back-Up Breaker)	송배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정격전압이 15킬로볼트(kV) 이상이고, 정격차단 전류가 40킬로암페어(kA) 이상인 것에 한한다.
8535	30	개폐기	송배전 전력기기 시험용으로서 투입시간오차가 ±0.5밀리초(ms) 이하이고, 투입전류가 200킬로암페어(kA) 이상이며, 단시간 전류가 초당 80킬로암페어(kA/s)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첨단 기술산업 및 방위산업

《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 》

- 소형전동기(직류 또는 교류식의 출력 1킬로와트(kW)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서보모타제조업
  - 스테핑모타제조업
  - 브러쉬레스모타제조업
  - 코아레스모타제조업
  - 마이크로모타제조업
  - 리니어모타제조업
- 전지(태양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및 리튬전지에 한한다) 제조업

《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 산업 》

- 자동제어 · 설계 및 생산장치와 자동화시스템(프로그램형 논리제어기(PLC) 및 컴퓨터 이용 설계 및 제조장치(CAD · CAM)에 한한다.) 제조업
- 자동제어 및 감시제어반제조업
- 전자제어기계 핵심부품(서보모타 · 스핀들모타 · 스테핑모타 · 볼스크류 · 그리퍼 및 하모닉 드라이브에 한한다.) 제조업